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100
----------	-------

발의연월일 : 2026. 9. 4

발 의 자 : 김재원 · 김성원 · 강경숙
오세희 · 강준현 · 김한규
이정문 · 임오경 · 차규근
정혜경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국내외 산업 전반에서 인공지능기술의 도입·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문화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기술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산업의 인공지능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양성, 인공지능기술 활용 문화상품의 실증 및 시범사업 지원 등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신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인공지능기술 활용 촉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인공지능기술(「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공지능기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기술을 융합한 문화기술의 개발·보급 및 활용 지원
2. 문화산업의 인공지능기술 활용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3.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문화상품의 실증 및 시범사업 지원
4. 문화상품의 제작·유통 관련 사업자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도입·활용 지원
5. 문화산업에 활용되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구축·제공 및 품질관리 지원
6. 그 밖에 문화산업의 인공지능기술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8조(인공지능기술 활용 촉진)</u> <u>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u> <u>업의 인공지능기술(「인공지능</u> <u>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u> <u>관한 기본법」 제2조제3호에</u> <u>따른 인공지능기술을 말한다.</u> <u>이하 같다) 활용을 촉진하기</u> <u>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u> <u>포함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u> <u>야 한다.</u> <u>1. 인공지능기술을 융합한 문화</u> <u>기술의 개발·보급 및 활용</u> <u>지원</u> <u>2. 문화산업의 인공지능기술 활</u> <u>용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u> <u>3.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문화</u> <u>상품의 실증 및 시범사업 지</u> <u>원</u> <u>4. 문화상품의 제작·유통 관련</u> <u>사업자에 대한 인공지능기술</u> <u>도입·활용 지원</u> <u>5. 문화산업에 활용되는 인공지</u> <u>능 학습용 데이터의 구축·제</u>

	<u>공 및 품질관리 지원</u> <u>6. 그 밖에 문화산업의 인공지</u> <u>능기술 활용 촉진을 위하여</u> <u>필요한 사항</u>
--	--